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2. 4.

제출자 : 이천시장

□ 개정이유

-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준농림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2000.7.29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설치비용 산정 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산정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준농림지역을 이천시 전지역으로 하되 그 시설물의 범위를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과 골프연습장으로 정함.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함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및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지역)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시 관할 구역안의 모든 준농림지역을 말한다.

②영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준농림지역안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2. 골프연습장

제17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용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 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m^2$ 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m^2$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교통행정과
임 안 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교통행정과장 이 윤 복
	담당·팀장 직위·성명	교통지도담당 이 종 태
	담당자 성명·전화	이 혁 세 (644-2391)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 <신설>	<p>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지역)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립지역이라 함은 시 관할구역안의 모든 준농립지역을 말한다.</p> <p>②영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준농립지역안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 골프연습장
제17조 <신설>	<p>제17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p> <p>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 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용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p> <p>②법 제19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m'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m'로 한다.